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2017. 5. 15)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5월 8일(월)
- 제출자 : 차재홍 의원 외 9명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5월 8일(월)

4. 관계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5. 제정이유

-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추가로 내용을 신설하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6. 주요 제정 내용

- 가.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횟수에 제한을 둠 (안 제4조)
- 나. 공사, 물품의 제조, 용역계약 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라. 조세감면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안 제15조)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추가로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상위법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5.10.~5.1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선구매와 조세감면 등임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지원책을 추가 및 개선하는 일부개

정안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생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요구를 살펴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협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5호, 2016.3.29., 타법개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